

## <참고자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도

### □ 배경

-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지속적인 산소치료로 환자의 호흡 곤란 감소 및 생존율 향상시키고 요양기관의 입원 기간 및 횡수를 단축\* 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키 위해 도입

- \* 가정산소서비스 도입으로 입원기간 38일→16일로 단축 (일본)
- \* COPD환자 15시간/일 산소치료한 경우, 5년 생존율이 25%→41~62% 개선
- \* 신경심리학적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가족관계, 경제사정, 정서안정 등

### □ 보험급여 개요

- (지원 내용)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전문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발생기기를 임대하여 산소치료를 하는 경우에 기기의 임대 비용 일부(80%)를 공단에서 지원
- (지원 금액) 기준금액(12만원)의 80%를 요양비로 지원
- 보험급여 기준

1.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동맥혈 가스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2) 산소포화도 검사
- 가)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 나)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 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나.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으로서 별도검사없이 “2호” 전문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2. 산소치료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다.
3.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 서비스 가격별 장비기준 및 서비스 내용

구분	장비기준			서비스내용	
	소음	소비전력	경보	방문주기	직영업소
월 12만원	45db이하	300w이하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 중 1가지	4개월	3개 이하
월16만원미만	35초과 ~45db미만	250w초과 ~300w미만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 중 2가지	3개월	4개 이상
월16만원	35db이하	250w이하	전원중단, 산소농도, 유량 중 3가지	3개월	6개 이상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보험급여 현황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건수	267	11,176	25,154	34,801	40,551	46,408	33,061
인원	247	2,912	5,108	6,467	7,108	7,841	7,324
금액	25,632	1,076,836	2,431,253	3,358,683	3,913,914	4,479,504	3,190,968

## □ 호흡기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등록인원	13,035	14,289	14,984	15,860	15,551	14,671
1급	2,410	2,681	2,740	2,941	2,700	2,373
2급	3,606	3,899	4,017	4,238	4,010	3,769
3급	7,018	7,709	8,207	8,681	8,830	8,509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자료 인용